
2019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계획

2018. 7.



행정안전부
(안전개선과)

■ ■ 목 차 ■ ■

I. 추진 배경	1
II. 공모사업 추진방향	2
III. 사업 선정계획	5
가.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	5
나.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	7
IV. 공모절차 및 배점기준 등	9
가. 공모절차	9
나. 배점기준 등	10
V. 사업계획서 작성지침	11
VI. 향후 추진일정	14

[붙임]

1. 평가관련 주요 변경내용
2. 보행환경개선지구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
3. 보행자우선도로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
4.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예시
5.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예시
6.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현황(2013~2017)
7. 보행환경개선지구 및 보행자우선도로 관련지침 등
8. 사업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

[별첨] 사업계획서(제출서식)

2019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계획

I 추진 배경

- **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의 핵심 선결과제**
 -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사망자가 가장 큰 비중*('17년)을 차지하고,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**('15년)
 - * '17년 교통사고 사망자 4,185명 중 보행 사망자 1,675명(40%)
 - **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3.5명 / OECD 평균 1.1명의 3.2배 수준(29개국 중 28위)
 -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필요

- **범정부 종합대책과 연계,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조기 확산**
 -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「보행안전 종합대책」*('17.9.) 및 「교통안전 종합대책」**('18.1.,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) 마련
 - * '21년까지 보행 중 사망자 1,050명 수준 감축 목표로 5개 분야 24개 추진과제 마련
 - ** '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,000명 수준 감축 목표로 5개 분야 38개 추진과제 마련
 - 범정부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요 핵심과제들을 중점 추진하여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조기 확산 유도
 - * 안전속도 50-30 등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, 보행자 우선도로·보행환경개선지구 등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확대, 보행자 보호시설 확충 등

- **보행자 교통사고 감축 성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지자체 선정, 집중 지원**
 -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또는 우려지역에 대한 권역단위 종합적 정비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 및 예방 유도
 - 지자체 공모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효과와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지자체 선정·지원, 전국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
 - * '13~'18년까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(공모) 58개소 선정, 국비 502억원 지원

II

공모사업 추진방향

기본방향

- ◆ 정부 종합대책 핵심과제 중점추진 :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, 안전속도 50-30 연계 강화
- ◆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 : 현행 단년도 사업 → 계속사업으로 전환
- ◆ 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·보완 : 사업계획 검증강화, 광역 지자체 역할 확대

□ 정부 종합대책 핵심과제 등 중점 추진

○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신규 추가

- 주택가, 상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을 보행자 우선도로*로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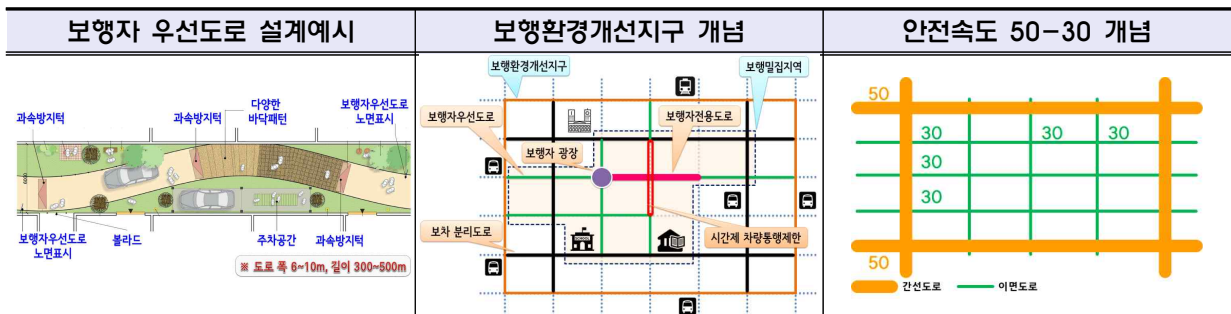
* 현행 법령상 근거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(기반시설),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(도로의 구분) → 법적 위상강화를 위해 보행안전법에 지정·조성 근거 마련 예정('18년)

- 보행자 우선도로로 설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보행친화적 노면포장, 노면표시, 교통정온화 시설 등 저비용 시설보강사업 실시
- 보행자 우선도로 확산을 위해 기존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과 별개로 공모사업 추진

○ 사업대상지역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안전속도 50-30* 연계 강화

* 보조간선도로, 보·차도 분리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는 50km/h,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별보호 지역은 30km/h로 속도를 설정하는 정책

-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 협의, 합리적인 면단위 제한속도 설정
-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선정, 50-30 관련 시설 등 집중 투입



-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유관기관 중점 추진사업과 연계 강화
 - 범정부적 협업사업 또는 관계부처·지자체 중점 추진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사업효과 제고(장소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종합·연계)
 - ※ 예) 도시재생 뉴딜사업(국토부),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사업(행안부), 생활권 교통환경개선사업(서울시) 등 /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부처 연계사업에 포함되어 있음

□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추진방식 변경

- 현행 단년도 사업에서 1~3년 계속사업으로 전환
 - 사전 행정절차 이행, 실시설계, 공사착수 등 장기간 소요
 - 지자체 예산 집행관리 강화, 사업계획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 사업추진방식 변경 추진(중장기적으로 3년 사업으로 정착)

구분	대상 유형	비고
2개년 사업	•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경우	(1년차) 40~60% (2년차) 잔여분
3개년 사업	• 사업계획은 좋으나, 사전 준비 및 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한 경우 • 사업계획 추가 보완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큰 경우	(1년차) 설계비 (2년차) 40~60% (3년차) 잔여분

* 실시설계 완료 등 사업준비가 상당부분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단년도 지원

- 관문심사제도(Gateway Review Process) 도입
 - 설계 완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에 한해 시공비 지원
 - ※ (예시) 선정된 설계비 사업지구 10개소일 경우, 우수사업 5개소 1차 시공비 지원, 나머지 5개소는 자체 정비 추진(설계 보완 등을 통해 차년도 평가시 재신청 가능)
 - 연도별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시공비 계속 지원 여부·규모 등 결정
 - ※ (예시) 1차 시공비 지원 후, 사업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2차 시공비 지원 여부·규모 등 결정

□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·보완

○ 사업추진 지연요인에 대한 사전 검증절차 강화

- 주민 민원, 유관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해 사업 지연사례 빈번

<주요 지연사례(예시)>

주민 민원	유관부서 협의지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방통행 지정, 노상주차 축소, 도로 선형조정 등 교통체계 개편 반대 • 토지 보상 협의지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선 지중화 사업 협의 미흡 • 상하수도, 오수관로 공사 등 타 부서 공사 중복 • 예산부서·지방의회 등 자원 조달방안 협의 미흡

- 계획 단계부터 추진과정상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「사전검토 체크리스트」 활용*, 제안서 제출시 첨부

* 주요 지연사례들에 대한 사전검토 완료 여부에 대한 체크 방식(예 : 도로, 하천 등 타 부서 및 유관기관 사업계획 중복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)

- 현장 평가시 지역주민 의견 확인 의무화(동의여부, 동의내용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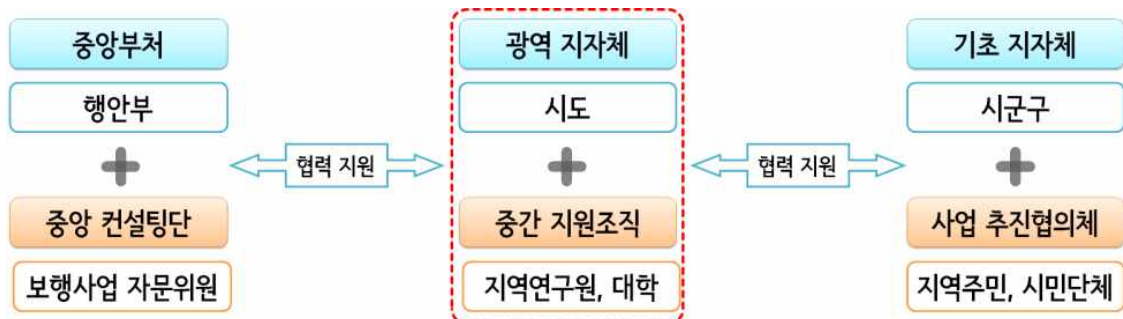
○ 광역 지자체 역할 확대 유도

- 시·도별 보행사업 선정위원 구성·운영

- 시·도별 제안서 제출시, 시·도 선정위원회 평가의견서 첨부

- 시·도 단위에서 지역 연구원 또는 대학을 활용, 중간 지원조직* 구성·운영방안 적극 검토(구성·운영 지자체 가점 부여)

* 지역별 사업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주요 결정 단계 또는 애로 사항 발생시 현장 컨설팅 역할을 하는 전문지원조직(예 :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중간지원조직)



Ⅲ

사업 선정계획

선정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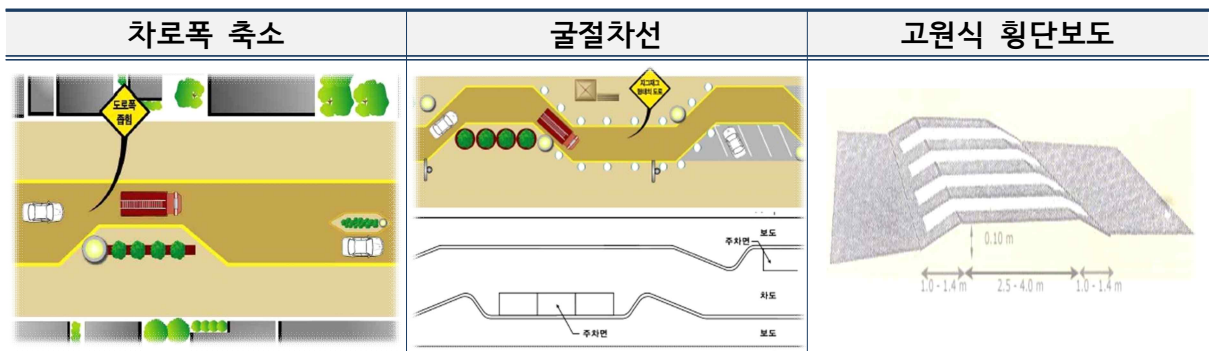
- ◆ (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) 10~15개소 내외, 개소당 국비 800~1,000백만원 내외
* 보행환경개선지구 국비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
- ◆ (보행자 우선도로 조성) 4~ 6개소 내외, 개소당 국비 80~100백만원 내외

가.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

□ 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자동차 통행 억제, 교통약자 배려, 보행위험요소 제거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
- (사업내용)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(보행환경개선지구)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종합적 정비 추진
 - 운영적 방안 : 최고속도 제한, 일방통행 지정, 시간별 차량통행 제한, 불법 주정차 단속, 신호체계 조정, 버스노선 조정 등
 - 시설적 방안 : 차량 속도 감소를 위한 교통정온화* 시설 설치,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, 기존 도로 정비 등

* 차로폭 축소, 굴절차선,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서행운전을 유도하는 기법



(참고자료) 2013 보행업무편람(행안부) [부록3]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 참조

□ 지원규모 및 선정방식

- (지원규모) 국비 기준 약 800 ~ 1,000백만원 (국비 50%, 지방비 50%)
* 국비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(평가결과에 따라 연간 지원규모 변동 가능)
- (선정방식) 시·도별 3개소 선정·제출 → 최종 10~15개소 선정
- 기존 단년도 사업 → 계속 사업으로 변경, 연차별 국비 지급



□ 선정대상

- 보행안전법 제9조(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)에 따라 「보행환경 개선 지구」로 지정 되었거나, 지구 지정을 추진 중(용역 등)인 지역
-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고,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(대학주변 포함)
-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등 범정부 협업사업, 지자체 중점 추진사업 등 타 사업(완료사업 포함)과 연계한 지역
- 교통사고 예방 등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가 크고,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



나.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

□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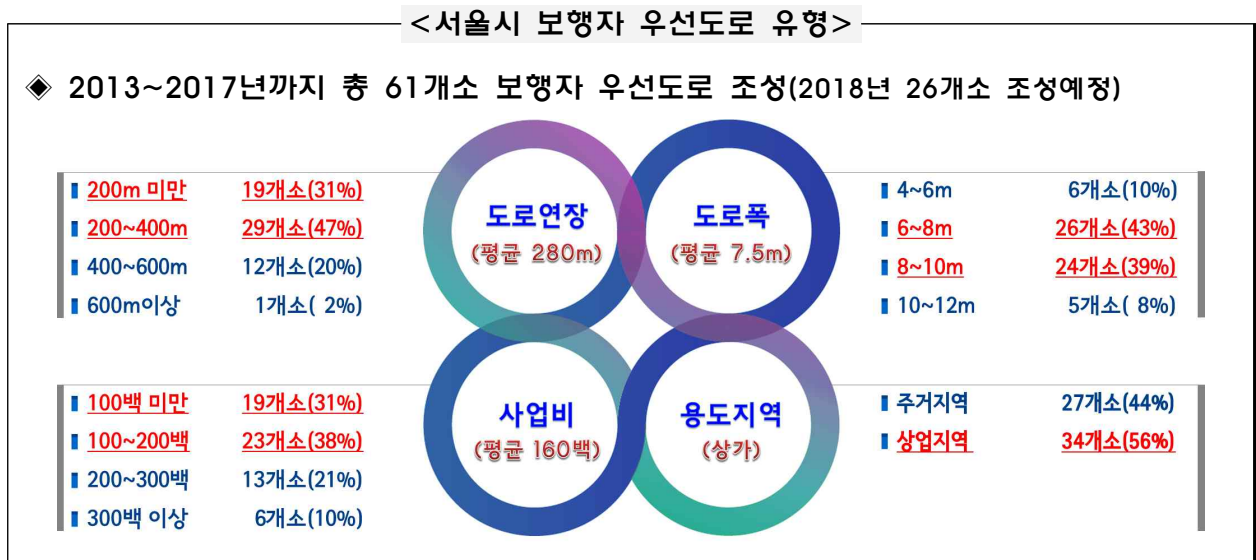
- (사업목적) 도로폭이 협소한 주택가, 상가 등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여건을 개선하고,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 조성
- (사업내용)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도로를 이용하되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로 조성
 - 보행자 위주의 다양한 포장기법 적용, 차량속도 30km/h 이하 제한
 - 진출입부는 고원식 과속방지턱, 노면요철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속도 저감구간 진입 또는 진출을 인지토록 유도
 - 교차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(고원식 교차로 등)
 -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적정 노상주차면 설치



- ① 기존의 도로와는 차별화된 공간이라는 점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인지토록 유도
 - ※ 보도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, 주행 가능 영역을 최소화하여 차량 속도 저감 유도
- ② 보·차도간 일체형 패턴을 사용하여 도로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
 - ※ 보행자 영역과 차량 영역이 분리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체 폭원을 일관된 포장 재질 및 디자인 패턴 적용
- ③ 고비용의 물리적 개선보다는 제한속도 하향, 보행자·운전자 행태개선 등 저비용의 운영개선

□ 지원규모 및 선정방식

- (지원규모) 국비 기준 약 80~100백만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(선정방식) 시·도별 2개소 선정·제출 → 최종 4~6개소 선정
- ※ '19년 시범사업 실시 후, '20년부터 예산 및 사업확대 예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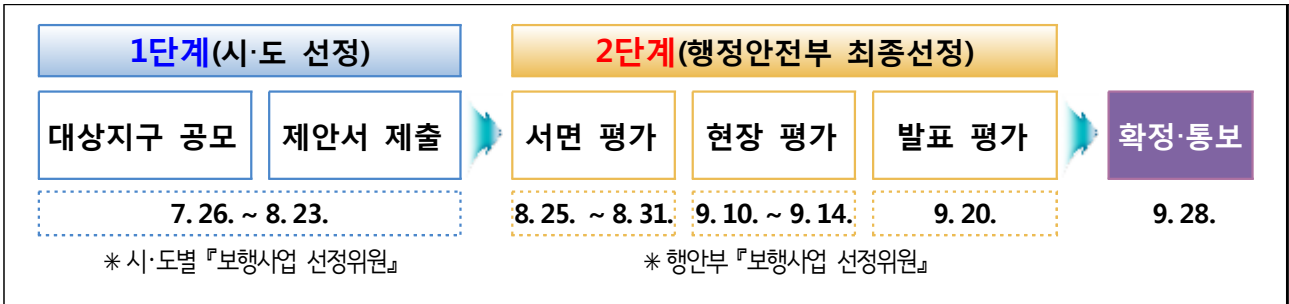
□ 선정대상

- 주택가, 상가 등 생활권 이면도로로서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
- ※ 가급적 폭 10m 미만 도로 및 보·차도 미분리도로 대상지 선정 권고
- 보행환경개선지구 등 보행관련 사업과 연계되는 지역
-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시설과 연계되는 지역
- 버스정류장, 지하철역 인근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
-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효과가 크고,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

☞ (참고자료) 보행자 우선도로 현황과 평가(2013~2016, 건축도시공간연구소) / 보행자 우선도로 가이드라인(2012, 국토부) / 보행자 우선도로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(2012, 국토부)

IV 공모절차 및 배점기준 등

가. 공모절차



□ 1단계(시·도) : 시·도별로 개선지구 3개, 우선도로 2개 이내 선정

- 시·군·구에서 제안서 작성, 시·도에 제출
 - 시·도에서는 제안서 자체평가 후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3개,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2개 이내 선정, 행정안전부에 제출
 - 제안서 심사를 위한 시·도별 「보행사업 선정위원」* 구성·운영
- * 보행안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준용(관계공무원과 보행, 교통,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등 7명 이내)

□ 2단계(행안부) : 개선지구 10~15개 내외, 우선도로 4~6개 내외 최종 선정

- (서면평가) 평가 후, 사업별 1.5~2배수 내외 지구 1차 선정
 - * 단순 보도설치, 가로 미화사업 등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은 배제
- (현장평가)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1차 선정된 사업대상 현지실사
 - * 사업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, 사업대상지 주변 현장여건 확인, 지역주민 의견 청취 등
- (발표평가)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* → 심사위원 질의·응답 → 평가
 - * 발표방법 : 파워포인트 이용, 7분 이내 / 발표자 : 지자체 사업 담당과장
- (사업확정) 서면·현장·발표평가 합산, 최종 사업 대상지 선정

나. 배점 기준 등

◆ (배점기준) 서면평가(60점), 현장평가(25점), 발표평가(15점) / 가·감점* 별도

* 보행환경개선지구 : 가·감점(최대 ±10점) /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: 가점(최대 10점)

◆ (평가방법) 보행사업 선정위원 구성, 위원별 평점결과 산술 평균

□ 배점기준

○ 서면평가(60점) :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등 4개 항목 14개 지표

대상지 선정의 적정성(20점)	사업계획 수립내용(20점)	사업의 실현가능성(10점)	기대효과(10점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행안전기본계획 수립,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/ 도로폭 적정성(4점) 보행량, 교통량 적정성(7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사업효과 극대화 지역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수(9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사업필요성 높은 지역 <p>3개 지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목표, 추진전략 적정성(3점) 물리적 환경개선 적정성(5점) 교통운영방안의 적정성(4점) 주민갈등 대처방안(4점) 유지관리 적정성(2점) 타 사업과 연계성(2점) <p>6개 지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자체 추진의지(4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지방의회 등 협력도 주민의 사업 인식도(4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주민설명회, 주민동의서 등 재원조달 등 사업추진계획 적정성(2점) <p>3개 지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행안전 개선효과(6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등 보행 안전성 보행통행량 증가효과(4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이동 편리성, 쾌적성 등 <p>2개 지표</p>

○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(40점) : 현장평가(25점), 발표평가(15점)

○ 가점 및 감점 : 가점(최대 10점), 감점(최대 10점)

- (가점)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업사업(1~3점), 자체 설계용역 추진 등 사전 준비정도(1~3점), 지방비 추가 확보 및 중간 지원조직 구성 등 노력도(1~4점)

- (감점) 최근 3년간('15~'17년)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 평균(△4~6점), 최근 3년간('15~'17년)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율(△2~4점)

가·감점 관련
참고사항

·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은 시·도 관할 시·군·구에 일괄 감점 부여
 * 실집행률 최하위 시·도는 지자체 공모선정 대상에서 제외('18년 인천시 제외)
 ·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을 고려, 해당되는 가점만 부여

□ 평가방법

○ 행안부 보행사업 선정위원 구성(교통·도시계획 등 민간 전문가 15명 내외)

○ 위원별 평점 결과를 산술평균(공정성을 위해 최고·최저 점수 제외)

V

사업계획서 작성지침

□ 추진절차

- (협의체 구성) 참여 주체별 사업추진체계 마련
 - 기초 지자체 중심 「보행사업 추진기획단」* 구성·운영
 - *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유관기관, 관련부서,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
 - 사업지구내 주민 협의체* 구성, 광역 지자체 중간지원조직** 구성
 - * 주민자치위원, 녹색어머니회, 학교운영위원회, 통·반장, 기초 의회의원, 상가번영회, 건물주(또는 임대상인) 모임 등 / ** 지역 대학, 연구원 등
- (의견수렴) 사업의 수립방향과 목표, 추진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, 지역주민,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

□ 사업계획서 작성지침

공통사항

- (일반사항) 위치도, 총괄계획 도면 및 횡단도, 그림, 사진 등 시각 자료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스케일로 작성
- (사업명)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, 적합한 사업명칭* 검토
 - *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명칭(예시) : 원미동 사람길 만들기, 빛의 거리 왕성길 특화거리 조성 등
- (평가의견) 우선순위, 총평, 항목별 평가의견 기재(1~2페이지) * 시·도 작성
- (사전검토) 주요 사업지연 사유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검토여부 체크, 검토내용 등을 비고란에 기재(1페이지)
- (요약서) 사업계획서의 핵심사항을 요약·기재(1~2페이지)

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계획

- (사업개요)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, 대상지 위치, 공간적 범위, 사업규모, 사업기간, 사업비 등 개괄적인 사업내용 기재
- (현황·실태) 대상지 일반현황,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, 대상지 교통량·교통사고·시설현황*,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등
 - * 「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」(2015, 舊 국민안전처) 사업 시행전 조사 항목 및 방법 참고(정량적 평가항목, 정성적 평가항목)
- (추진계획)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비전과 개선목표, 사업구간별 개선전후 횡단면도 및 예시 등 구체적인 개선계획 제시
 - 개선목표 : 보행량, 보행만족도 등 정량적 지표 기준 제시
 - 개선계획 : 차로, 보도 등 횡단구조*를 구체적으로 표기
 - * 폭원을 반드시 표기, 제출 자료상에 치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너무 작지 않게 표현
 - 추진일정 : 사업 여건,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계획 수립(1~3년 계획)
- (사업관리) 사업 진행 중 발생 가능한 부정적 요인*에 대한 해결방안, 사전·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, 유지관리 방안(주민 참여 관리)
 - * 불법 주정차 및 보행 장애물 관리대책, 주민 민원 갈등관리대책, 사업비 집행대책은 반드시 포함
- (소요예산) 연차별 자원 조달방안, 공종별·구간별 세부 사업내역 제시
 - ※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역은 국비 지원예산 산출시 제외(예 : 간판정비, 한전 지중화사업, 공용주차장 건설 등) → 필요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
- (기대효과)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, 보행 활성화 효과 등 기재(가급적 정량적 지표 제시)

☞ 행안부 평가과정에서 사업규모 및 예산, 추진일정 등 조정·확정

보행자우선도로 사업계획

- (사업개요)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필요성, 대상지 위치, 사업규모, 사업기간, 사업비 등 **개괄적인 사업내용 기재**
- (현황·실태) 대상지 일반현황, 입지특성 및 주변현황, 대상지 **교통량·교통사고·시설현황***,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등
 - * 보행량, 교통량, 보행사고 발생현황, 도로폭, 보행관련시설 등
- (추진계획) 개선목표,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계획 등
 - 개선목표 : 보행량, 보행만족도 등 **정량적 지표 기준 제시**
 - 시설개선 : 차로 등 **횡단구조*** 및 **포장유형****을 구체적으로 표기
 - * 폭원을 반드시 표기, 제출 자료상에 치수 확인이 가능하도록 너무 작지 않게 표현
 - ** 도막포장, 보도블록 포장, 구간별 혼용 포장 등
 - 프로그램 : 속도제한, 일방통행,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등
- (사업관리) 사업 진행 중 발생 가능한 **부정적 요인***에 대한 **해결방안**, 사전·사후 **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**, **유지관리 방안**(주민 참여 관리)
 - * 불법 주정차 및 보행 장애물 관리대책, 주민 민원 갈등관리대책, 사업비 집행대책은 반드시 포함
- (소요예산) **재원 조달방안**, **공종별·구간별 세부 사업내역 제시**
 - ※ 투입 재원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작성
- (기대효과)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따른 **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**, **보행교통 활성화 효과** 등 기재(가급적 정량적 지표 제시)

☞ 저비용 시설보강 및 행태개선 사업임을 고려, 연내 사업마무리 목표로 추진

VI**향후 추진일정**

- '19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계획 통보 : '18. 7. 26.
- 「보행사업 선정위원」 구성 등 심사계획 수립(행안부) : '18. 8월중
- 시·도별 사업계획서 제출(시·도→행안부) : '18. 8. 23.
※ 사업계획서 용량이 클 경우, 이메일로 제출(kmj12345@korea.kr)
- 시·도별 사업계획서 서면평가(1차) : '18. 8. 25. ~ 8. 31.
- 1차 선정결과 및 현장평가 계획 통보 : '18. 9. 6.
- 시·도별 사업대상지 현장평가(2차) : '18. 9. 10. ~ 9. 14.
- 발표평가 계획 통보 : '18. 9. 17.
- 시·도별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심사(3차) : '18. 9. 20.
- '19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지 확정·통보 : '18. 9. 28.

□ **사업내용**

구분	2019년	2018년
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•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(신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

□ **사업규모 및 방식**

구분	2019년	2018년
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 (변경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사업비) 개소당 약 8~10억 내외 * 국비지원 규모는 총사업비 기준 • (사업량) 10 ~ 15개 지구 선정 • (사업방식) 1~3년 사업(계속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사업비) 개소당 약 5~7억 내외 • (사업량) 7개 지구 내외 • (사업방식) 단년도 사업
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사업비) 개소당 약 0.8~1억원 내외 • (사업량) 4 ~ 6개소 선정 • (사업방식) 단년도 사업 	-

□ **배점기준**

구분	2019년	2018년
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	평가지표 (변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면심사(6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(20), 사업계획 수립내용(20) - 사업의 실현 가능성(10), 기대효과(10) • 현장평가(25점) • 발표평가(15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면심사(6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(10), 사업계획 수립내용(35) - 사업의 실현 가능성(10), 기대효과(5) • 현장평가(25점) • 발표평가(15점)
	가점 (변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10점 - 중앙부처 협업사업 및 지자체 중점사업 지구(1~3) - 자체 설계용역 추진 등 사전준비(1~3) - 지방비 추가 확보(1~2) - 광역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운영(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12점 -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시군구(3) - 자체 설계용역 추진 등 사업추진 노력도(1~5) - 지방비 추가 확보(1~4)
	감점 (변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△10점 - 최근 3년간 실적행률 평균(△4~△6) ※ 실적행률 최하위 지자체 공모선정대상 제외 - 최근 3년간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이행률(△2~△4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△5점 - 최근 2년간 실적행률 평균(△3~△5) ※ 실적행률 최하위 지자체 공모선정대상 제외
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(신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면심사(60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(20), 사업계획 수립내용(20) - 사업의 실현 가능성(10), 기대효과(10) • 현장평가(25점) • 발표평가(15점) • 가점 최대(10점) 	-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평점	평가점수			
				우수	양호	보통	미흡
합 계		100					
1.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	소 계	20					
	① 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여부	4		4	3	2	1
	② 사업대상지 교통·보행량의 적정성 (사업효과 극대화지역)	7		7	5	3	1
	③ 사업대상지 교통·보행사고 사상자수 (사업필요성 높은지역)	9		9	7	5	3
2. 사업계획 수립내용	소 계	20					
	① 비전, 목표, 추진전략 등 기본방향의 적정성과 독창성	3		3	2	1.5	1
	② 보도신설, 교통정온화시설 도입 등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의 적정성	5		5	4	3	2
	③ 속도제한, 일방통행, 차량통행금지, 신호주기 감축 및 개선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운영방안 도입의 적정성	4		4	3	2	1
	④ 불법주정차, 주차공간, 주민갈등 등에 대한 대처방안	4		4	3	2	1
	⑤ 사전·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, 유지관리 적정성	2		2	1.5	1	0.5
	⑥ 타 사업과 연계성(도시 재생사업, 한전지중화 등) * 지중화사업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구간이나 협의 완료된 지역	2		2	1.5	1	0.5
3. 사업의 실현가능성	소 계	10					
	①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추진 의지	4		4	3	2	1
	② 주민의 사업 필요성 인식 정도 (주민설명회, 공청회개최, 주민동의서 징구 등 포함)	4		4	3	2	1
	③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	2		2	1.5	1	0.5
4. 기대 효과	소 계	10					
	① 교통사고 예방 등 보행안전 개선효과	6		6	5	4	3
	② 보행통행량 증가 등 보행편의 개선효과	4		4	3	2	1
5. 발표심사 및 현지실사	소 계	40					
	① 현지심사(필요성·사업내용·효과 등 종합심사)	25		25~21	20~16	15~11	10~5
	② 발표심사(필요성·사업내용·효과 등 종합심사)	15		15~14	13~11	10~8	7~3
가점 및 감점	소 계						
	① 가점	최대 10					
	② 감점	최대△10					

가점(최대 10점)	감점(최대 △10점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부처 협업사업(보행안전) 확정 사업지구(+2) *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(행안부), 도시재생 뉴딜사업(국토부) 등 • 자치단체 중점사업(보행안전) 확정 사업지구(+1) * 생활권 교통환경개선사업(서울시) 등 • 자체 실시설계용역 추진(+2) • 관계기관 사전협의 완료(+1) / 교통체계 개편(경찰서) 등 • 지방비 추가 확보 : 국비 1.5배 이상(+2), 1.2배 이상(+1) • 광역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운영(+2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근 3년간('15~'17) 교부액 대비 실적행률 평균 : 30%미만(△6점), 30~50%미만(△5점), 50~60%미만(△4점) - 산출식 : ('15년 실적행률 + '16년 실적행률 + '17년 실적행률) / 3 • 최근 3년간('15~'17) 현장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이행률 평균 : 30%미만(△4점), 30~50%미만(△3점), 50~60%미만(△2점) - 산출식 : ('15년 이행률 + '16년 이행률 + '17년 이행률) / 3 * 이행률 = 이행건수/지적건수 x 100 / 이행건수 : 완료 + 추진 중 건수 <p>실적행률 최하위 지자체(시·도) 공모선정대상 제외</p>

붙임 3

보행자우선도로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평점	평가점수			
				우수	양호	보통	미흡
합 계		100					
1.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	소 계	20					
	① 도로폭 등 사업대상지 규모의 적정성	4		4	3	2	1
	② 사업대상지 도로환경, 통행량의 적정성 (사업효과 극대화지역) * 사업대상지 교통량(첨두시) 120대/h 미만 권고	7		7	5	3	1
	③ 사업대상지 교통·보행사고 사상자수 (사업필요성 높은지역)	9		9	7	5	3
2. 사업계획 수립내용	소 계	20					
	① 추진방안의 적정성과 독창성	3		3	2	1.5	1
	② 보행친화적 노면포장, 교통정문화시설 도입 등 보행안전 증진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의 적정성	5		5	4	3	2
	③ 속도제한(30km 이하), 일방통행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운영방안 도입의 적정성	4		4	3	2	1
	④ 불법주정차, 주차공간, 주민갈등 등에 대한 대처방안	4		4	3	2	1
	⑤ 사전·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, 유지관리 적정성	2		2	1.5	1	0.5
	⑥ 타 사업과 연계성(보행환경 개선지구, 생활도로, 경관개선 등)	2		2	1.5	1	0.5
3. 사업의 실현가능성	소 계	10					
	①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회 등 추진 의지	4		4	3	2	1
	② 주민의 사업 필요성 인식 정도 (주민설명회, 공청회개최, 주민동의서 징구 등 포함)	4		4	3	2	1
	③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	2		2	1.5	1	0.5
4. 기대 효과	소 계	10					
	① 교통사고 예방 등 보행안전 개선효과	6		6	5	4	3
	② 보행통행량 증가 등 보행편의 개선효과	4		4	3	2	1
5. 발표심사 및 현지실사	소 계	40					
	① 현지심사(필요성·사업내용·효과 등 종합심사)	25		25~21	20~16	15~11	10~5
	② 발표심사(필요성·사업내용·효과 등 종합심사)	15		15~14	13~11	10~8	7~3
가점	소 계						
	① 가점	최대 10					
	② 감점	-					

가점(최대 10점)	감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부처 협업사업(보행안전) 확정 사업지구(+2) *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(행안부), 도시재생 뉴딜사업(국토부) 등 • 자치단체 중점사업(보행안전) 확정 사업지구(+1) * 생활권 교통환경개선사업(서울시) 등 • 자체 시설설계용역 추진(+2) • 관계기관 사전협의 완료(+1) / 교통체계 개편(경찰서) 등 • 지방비 추가 확보 : 국비 1.5배 이상(+2), 1.2배 이상(+1) • 광역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운영(+2) 	<p>신규 사업인 관계로 '19년 공모사업 선정시에는 제외 (20년 공모사업 선정시 반영)</p>

사업개요

원미동 사람길 만들기

사업의 필요성

- 도시교통 정책을 차량 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전환
 - 보도부재로 인한 시민불편
 -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안전개선
 - 학교, 전통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
- ➔ 원미동 사람들이 걷고 싶은 보행중심의 원미동 사람길 만들기

사업개요

구 분	내용
사업명칭	원미동 사람길 만들기
사업지구	경기도 부천시 원미1동 일원
사업면적	면적 263,000㎡
사업내용	·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· 유효 보도폭 확보(차로폭 최소화) · 통행체계 개선(일방통행 전환)으로 보행공간 확보 · 교통정온화기법 도입 (시간제 통행제한, 속도규제, 시케인 등) · 어린이/노인 보호구역 지정 · 다목적(주차단속,방범) CCTV 구축
사업비용	17억(국비 6억, 시비 11억)
사업기간	약 12개월(2018년 1월 ~ 12월)
사업유형	유형 1, 4(생활안전지구, 교통약자지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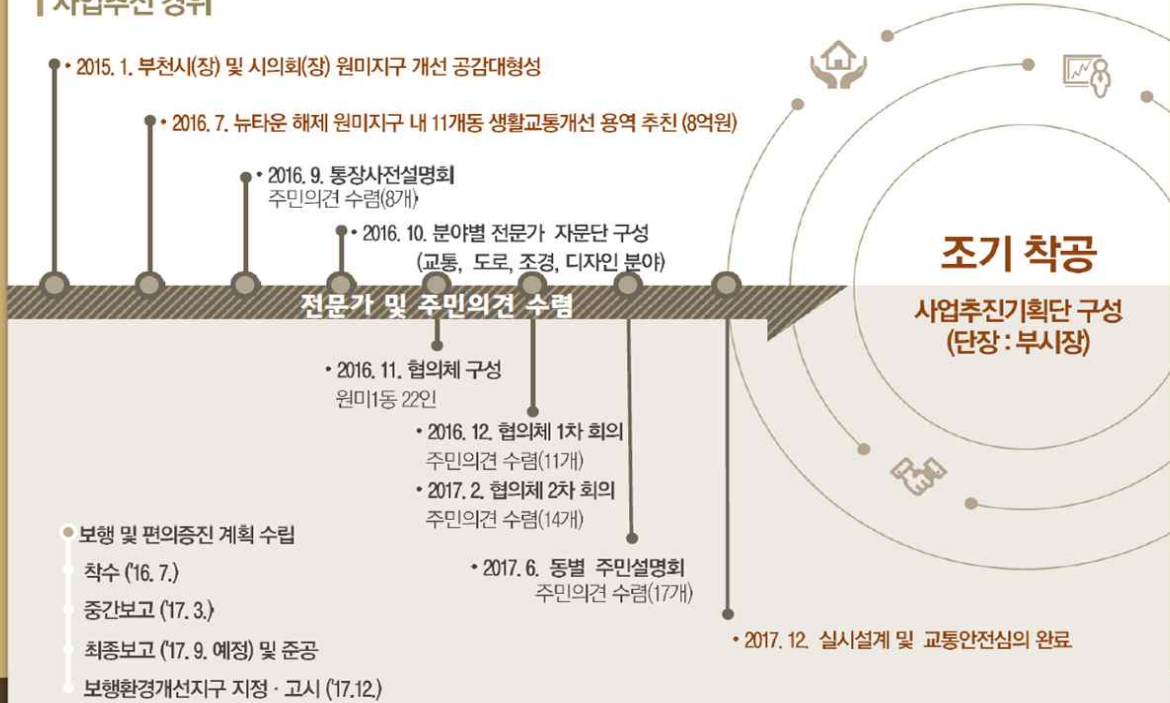


부천시 원미1동 주민자치위원회 제공

사업개요

원미동 사람길 만들기

사업추진 경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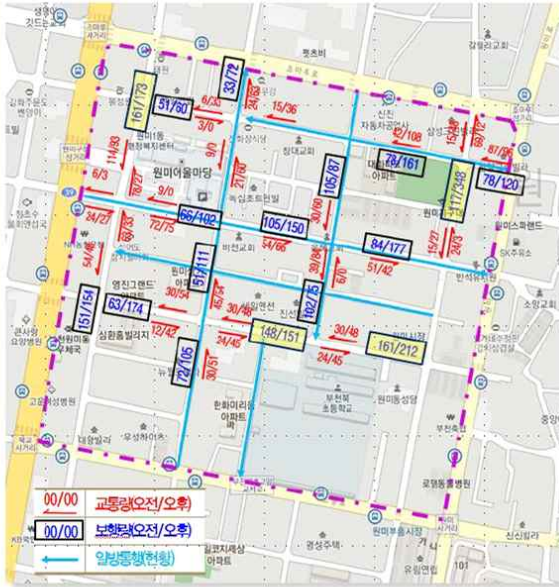
부천시 원미1동 주민자치위원회 제공

사업지 일반현황

원미동 사람길 만들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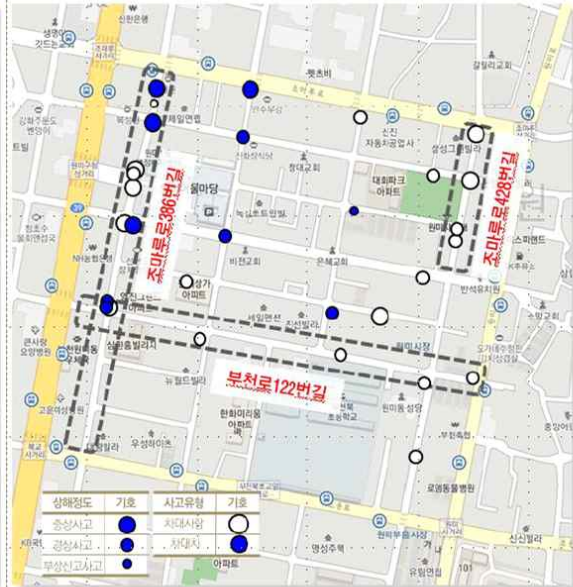
교통량 및 통행체계

- 원미어울마당 입구, 북초등학교 후문, 원미종합시장 입구
가로의 보행량이 150~350명/가로 많음
- 일방통행은 조마루로 398번길 등 총 11개 구간 운영 중



유형별 교통사고 현황

- 지구내 보행자 사고는 최근 3년간 총 20건으로 연평균 7건
- 사업지내 3개 축 사고 다발구간으로 개선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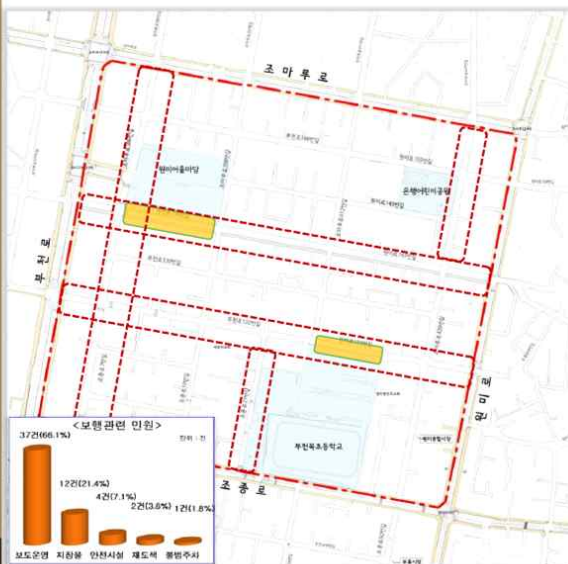
2018 인천형 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

사업지 일반현황

원미동 사람길 만들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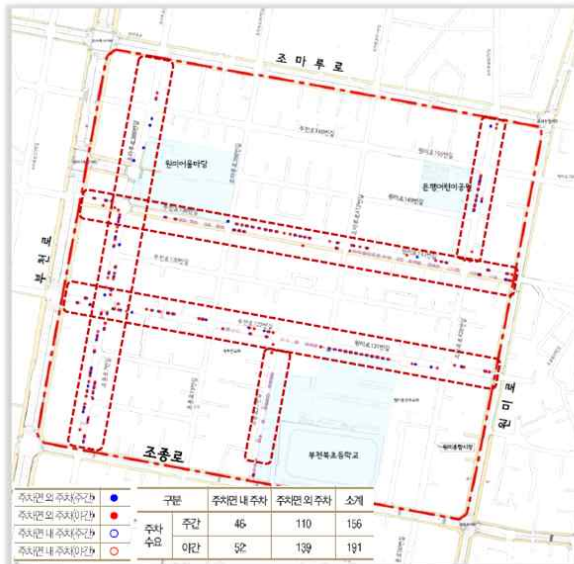
보도율 및 보행관련 민원 현황

- 개선대상 도로 1.9km 중 보도설치 0.2km (10%)
- ※ 보도율 2.4%(보도면적: 375㎡ / 도로면적 15,582㎡)
- 보행관련 민원 중 보도운영 관련 민원 66.1%(37건, 2014~2016)



노상 주차 실태

- 개선대상 도로내 노상 주차수요는 주간 156대, 야간 191대임
(현재 사업지내 노상주차면 52면 운영 중)



2018 인천형 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



원미동 사람길 만들기

1번측 (조마루로 386번길~조종로 7번길)

현황 및 문제점



- 상가, 빌라 및 원미어울마당 입지 등으로 보행수요(170인/하) 많음
- 보도 부재에 따른 보차혼용으로 보행자 배려부족
- 도로양측 주차로 인한 시거 불량으로 교통사고 다발(최근 3년 11건)
- 차량 교행 어려움으로 주민간 갈등
- 원미노인복지관(원미어울마당 내, 1,400인/일) 이용 어르신 안전대책 필요

개선방안



- 일방통행 운영으로 상충 최소화
- 시제인 기법을 통한 시행유도
- 차량의 보도 불법진입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
- 보행자우선도로 및 Zone20 자정을 통한 보행 안전 확보
-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시설 개선

2018 안전도시 보행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

주정차 관리대책

원미동 사람길 만들기

노상 주차수급 현황(아간)

구분	노상주차수요 (a)	노상주차공급 (b)	부족분 (b-a)
아간	191	100	91

- 원미어울마당(218면), 여성청소년센터(33면), 새부천교회(20면) 이용 유도
- 은행어린이공원 주차장(187면) 조기 추진 (2020년 착공 예정)

가로별 주차관리 대책

1. 조마루로386번길~조종로7번길 : 아간 수요 39면
 - 노상주차면 설치 : 27면
 - 원미어울마당 주차장(218면) 이용 유도
2. 조종로27번길 : 아간 수요 17면
 - 여성청소년센터(33면) 개방 협의 완료
3. 부천로122번길~원미로131번길 : 아간 수요 50면
 - 노상주차면 설치 : 36면
 - 새부천교회(20면), 여성청소년센터(33면) 개방 협의 완료
4. 부천로136번길~원미로143번길 : 아간 수요 71면
 - 노상주차면 설치 : 30면
 - 원미어울마당 주차장(218면) 이용 유도
 - 은행어린이공원 주차장(187면) 조기 추진
5. 조마루로420번길 : 아간 수요 14면
 - 노상주차면 설치 : 7면
 - 은행어린이공원 주차장(187면) 조기 추진

불법 주차방지 대책

-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(3개소)
- 가각부 주차 금지주차금지구역 지정
- 단차없는 보도에 블라드, 화분 등 설치



민서(은)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
2018 안진행도 보행환경조성사업

민원방지대책

원미동 사람길 만들기

- 원칙 |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착수전 공감대 형성 | Bottom-Up 방식의 주민과의 소통 | 현장 중심 소통 창구 활용

준비단계 : 공감대 형성

1. 생활도로 및 시장 접근도로 개선
 - 지역 주민 및 상인회와의 현장 중심 소통 창구 마련

- 2015. 시(장)과 시의회(장) : 원미지구 개선 용역 추진(8억원 예산 수립)
- 2016.9. 동별 설명회(2회)
- ~ 협의회 회의(2회)
- 전문가 자문(2회)
- 2017. 8. 상인회 설명회(1회)

2. 통학로 개선 : 학교, 교육청, 학부모와 지속 소통

- 2017.9. 북초교, 교육청, 학부모운영위원회, 김경협 국회의원실, 부천시 설명회 및 동의절차 완료(50인 참석)

3.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홍보 캠페인

사업추진기획단 녹색어머니회, 원미시장상인회, 지역주민, 보행자집미, 부천시, 경찰서 등

공사 시행시 : 주민의견 수렴 창구 마련

- 사업추진기획단 구성시 사업추진기획단 소속 주민참여 민원대응 TF팀 구성 - 현장에서 주민과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



주요 민원 방지 대책

- **일방통행 지정 및 운영**
 - 협의체 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 완료
 - 민원대응 T/F 팀 구성을 통한 개별 민원 대응체계 구축
- **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민원**
 - 대체 주차공간(은행어린이공원 2020년 착공 예정) 확보 및 홍보
 - 보행환경조성의 필요성 지속 홍보 및 설득

민서(은)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
2018 안진행도 보행환경조성사업

보행자우선도로 노면표시



속도저감용 바닥포장



고원식 교차로



진출입부 턱낮춤



바닥 조명등



휴게 시설



연번	연도	자 치 구	위 치	사업규모		
계			61개소			
1	'13년	구로구	개봉로3길	폭 10m	연장 490m	
2		중랑구	면목로48길	폭 8m	연장 410m	
3	'14년	중구	동호로11길	폭 8m	연장 500m	
4		노원구	상계로3길	폭 8m	연장 370m	
5		구로구	경인로15길	폭 8m	연장 400m	
6		강동구	고덕로38길	폭 10m	연장 430m	
7		종로구	북촌로5가길	폭 6m	연장 240m	
8		금천구	금하로 23길	폭 10m	연장 420m	
9		서초구	방배천로2길	폭 12m	연장 325m	
10		은평구	연서로21길	폭 9m	연장 380m	
11		'15년	종로구	우정국로2길, 종로10길	폭 8m	연장 360m
12			용산구	녹사평대로46길	폭 5m	연장 380m
13	구로구		시흥대로163길	폭 8m	연장 150m	
14	서대문구		명지대2길	폭 8m	연장 170m	
15	강서구		까치산로4길	폭 8m	연장 300m	
16	동작구		노량진로16길	폭 8m	연장 300m	
17	강동구		동남로65길	폭 8m	연장 160m	
18	광진구		능동로10길	폭 5m	연장 180m	
19	금천구		시흥대로122길	폭 8m	연장 300m	
20	성북구		인촌로27길	폭 6m	연장 150m	
21	은평구		은평로21길	폭 8m	연장 520m	
22	관악구		국회단지길	폭 12m	연장 190m	
23	중랑구		상봉중앙로8나길	폭 6m	연장 360m	

연번	연도	자 치 구	위 치	사업규모		
24	'16년	종량구	망우로55길	폭 5.5~9.5m	연장 190m	
25		마포구	와우산로21길	폭 6m	연장 200m	
26		성북구	종암로21길	폭 5~6.8m	연장 490m	
27		성북구	아리랑로19길	폭 4m	연장 300m	
28		종로구	자하문로7길	폭 6m	연장 380m	
29		노원구	동일로218가길	폭 6.5m	연장 250m	
30		은평구	연서로27길	폭 8m	연장 200m	
31		은평구	연서로25길	폭 8m	연장 245m	
32		동작구	국사봉2길	폭 6~8m	연장 260m	
33		송파구	백제고분로7길	폭 8~9m	연장 480m	
34		용산구	녹사평대로40길	폭 4~6m	연장 350m	
35		구로구	고척로27바길	폭 8~10m	연장 220m	
36		금천구	시흥대로63길	폭 6m	연장 230m	
37		서대문구	연세로5가길~7안길~9길	폭 6~7m	연장 340m	
38		광진구	아차산로49길	폭 5m	연장 80m	
39		광진구	자양로50길	폭 5.5m	연장 200m	
40		강동구	양재대로116길	폭 6m	연장 500m	
41		영등포구	당산로33길	폭 8.5m	연장 140m	
42		성동구	성수이로12길	폭 7~8m	연장 220m	
43		서초구	서초대로77길	폭 8~9.5m	연장 290m	
44		'17년	종로구	통일로12길	폭 5m	연장 100m
45			종로구	종로31길	폭 5~8m	연장 300m
46			성동구	성덕정17길	폭 5~6m	연장 150m
47			광진구	아차산로 51,53,55길	폭 5~8m	연장 240m
48			동대문구	한천로40길	폭 9m	연장 100m
49			성북구	삼선교로10길	폭 5~7m	연장 230m
50			강북구	도봉로87길	폭 7~8m	연장 270m
51			도봉구	노해로63길	폭 4~5m	연장 140m
52			노원구	한글비석로20길~덕릉로83길	폭 4~6m	연장 330m
53			은평구	연서로35길	폭 6~7m	연장 150m
54			서대문구	연세로4길	폭 7m	연장 380m
55			마포구	어울마당로	폭 6~10m	연장 220m
56			양천구	목동중앙로13길	폭 6m	연장 150m
57			구로구	디지털로32가길	폭 4~6m	연장 330m
58			영등포구	신평로8길	폭 7m	연장 100m
59			관악구	관악로14길	폭 4~6m	연장 680m
60			강남구	봉은사로2길	폭 6~7m	연장 340m
61			종로구	인사동4길	폭 7~8m	연장 110m

□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련지침

구분	관련 지침	비고
행정안전부	• 보행업무편람(★)	2013
	•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(★)	2015
	• 보행자길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	2013
	• 보행자 전용길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	2013
	•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설계매뉴얼	2010
	•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	2015
	•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	2016
국토교통부	•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 매뉴얼 - 계획, 조사, 설계, 유지관리, 갈등관리매뉴얼	2008
경찰청	•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	2017
건축도시	•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개선방안(★)	2017
공간연구소	• 2016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	2017

□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지침 등

구분	관련 지침	비고
국토교통부	• 보행자 우선도로 가이드라인(★)	2012
	• 보행자 우선도로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	2012
건축도시 공간연구소	• 2013 보행자 우선도로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(★)	2014
	• 2014 보행자 우선도로 현황과 평가(★)	2015
	• 2016 보행자 우선도로 현황과 평가(★)	2017

□ 문서양식

- 글꼴 및 글자크기

1. 16 point HY 헤드라인 M (진하게)

□ 14 point 휴먼명조 (진하게)

- 14 point 휴먼명조
 - 14 point 휴먼명조
 - ※ 12point 중고딕

□ 증빙서류

- 증빙자료는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, 평가항목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
- 증빙자료의 목차를 1~2페이지로 작성하여 첨부
 - 참고자료의 연번은 평가항목의 순서를 고려하여 표시
 - * 예시) “1-①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여부”의 두 번째 참고자료인 경우 1-①-2

〈증빙자료 제출 목록(예시)〉

연번	자료명	페이지
1-①-1		
1-①-2		
1-②-1		
...		
4-①-1		
4-①-2		
4-②-1		
가점-1		
감점-1		